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5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8. 6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인구7만이상인 다사읍에 2개과를 신설
- 공직선거법 개정 및 대구광역시 자치구·군의원 선거구획정 확정에 따른 달성군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기구확대

3. 주요내용

가.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(안 별표)

- 총 정원 : 885명 → 887명 (증2)
- 집행기관 정원 : 872명 → 873명 (증1)
- 의회사무기구 정원 : 13명 → 14명 (증1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9조,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시 예산 확보 예정

다. 기타사항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성별/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3) 규제심사 : 원안 동의

(4) 입법예고 : 2018. 4. 20. ~ 2018. 5. 10.

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885”을 “887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872”을 “873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13”을 “14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4조 본문 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 별표 2 】

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 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1.1% 이내	5.9% 이내	28% 이내	30% 이내	27% 이내	8% 이상

비 고 : 읍·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2.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

구 분	연 구 직		지 도 직	
	연 구 관	연 구 사	지 도 관	지 도 사
비 율	3% 이내	97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

비 고 : 읍·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3. 별정직 공무원

구 분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-	100%	-	-	-

비 고

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【 별 표 3 】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구 분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국	직 속 기 관	읍 및 그 출장소	면
총 계	885887	553	1314	98	123124	98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856858	548	1314	74	123124	98
3급	1	1				
4급	78	5	01	1	1	
5급	4041	25	32	4	35	5
6급이하 계	808	517	1011	69	119118	93
연구직 계	3	3				
연 구 관						
연 구 사	3	3				
지도직 계	24			24		
지 도 관	2			2		
지 도 사	22			22		
별정직 계	1	1				
5급 상당						
6급상당 이하 계	1	1	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 이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 이라 한다)을 <u>885</u>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872</u>명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13</u>명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<u>887</u>----- ----- 1. ----- : <u>873</u>명 2. ----- : <u>14</u>명

소요비용 추계서

1. 사업개요

인구7만이상인 다사읍에 2개과를 신설과 선거구획정 확정에 따른 의원정수(10명) 달성군의회사무국으로 기구확대 설치에 따라 행정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여 군민중심 성과위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일반직 공무원 증원 2명(4급 +1, 5급 +1)

3. 관련 조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
 - 4·5급(연봉산정)기준으로 작성
 -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은 3.8%로 산정

나. 추계 결과 : 1,052,943천원
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1,052,943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군비 1,052,943천원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기획예산실 기획담당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8)	2차년도 (2019)	3차년도 (2020)	4차년도 (2021)	5차년도 (2022)	계
세 입		195,181	202,597	210,296	218,287	226,582	1,052,943
지 방 세		195,181	202,597	210,296	218,287	226,582	1,052,943
의존재원							
세 출		195,181	202,597	210,296	218,287	226,582	1,052,943
인 건 비		195,181	202,597	210,296	218,287	226,582	1,052,943
재원 조달		195,181	202,597	210,296	218,287	226,582	1,052,943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	
△△특별회계							
군 비		195,181	202,597	210,296	218,287	226,582	1,052,943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

□ 지방자치법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>
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(직급별 정원)

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(정원의 규정)

-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 - 2. 본청·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 -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